

행 정 자 치 부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자연공원 내 행위허가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양양군, 횡성군

관 련 자 ① 강원도 ○○○○과(전 ○○과) 지방○○○○ ○○○
② 양양군 ○○○○과 지방○○○○○ ○○○
③ 양양군 ○○○사업소(전 ○○○○과) 지방○○○○ ○○○
④ 양양군 ○○○○과(전 ○○○○사업소) 지방○○○○○ ○○○
⑤ 횡성군 ○○○○과(전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3. 2. 13.부터 2014. 7. 27.까지 ○○과(구, ○○○○과)에 근무하면서 “2013년 ○○○○지역 정비사업”의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관련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지방○○○○○ ○○○은 2013. 3. 4.부터 2014. 7. 6.까지 “2013년 ○○○○지역 정비사업”의 자연공원 내 개발행위 허가 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자(현, ○○○○사업소)로 근무하였으며, 지방○○○○ ○○○은 2013. 3. 4.부터 2014. 10. 31.까지 ○○○○과(구, ○○○○과)에서 “2013년 ○○○○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고, 지방○○○○ ○○○은 2014. 11. 1.부터 2015. 10. 6.까지 ○○○○사업소에서 “○○○○○ 조성사업”의 추진 및 자연공원 내 허가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지방○○○○○ ○○○은 2012. 7. 23.부터 2014. 7. 21.까지 ○○과(현, ○○○○

과)에 근무하면서 자연공원 내 초지전용 개발행위 관련업무의 실무책임자였다.

1. 양양군 자연공원 내 행위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7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21조제2항, 제40조에 따르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는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로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대상 중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매립·간척 그 밖의 토질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에 따르면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의 적용지역 중 제18조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① 독립공원위원회 협의 부적정(강원도 ○○○○과)

강원도 ○○○○과는 양양군수(○○○○과)가 ○○○○공원 내 양양군 ○○○면 ○○리 000번지 외 00필지 상에 “2013년 ○○○○지역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2013. 3. 18.) 건이 사업부지 면적(30필지, 배수로 1.27km, 저류지 5,304.5㎡, 총면적 9,475㎡)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매립·간척 그 밖의 토질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해당하여 독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업임에도 관련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하여 독립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협의 처리하였다.

② 자연공원 내 행위허가 부적정(양양군 ○○○○사업소)

양양군 ○○○○사업소(구, ○○○○과)는 양양군 ○○○○과(구, ○○○○과)가 ○○○○공원 내 양양군 ○○○면 ○○리 000번지 외 00필지 상에 “2013년 ○○○○지역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2013. 3. 18.)을 처리하면서 사업부지 면적(30필지, 배수로 1.27km, 저류지 5,304.5㎡, 총면적 9,475㎡)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사업에 해당함에도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협의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을 허가하였다.

③ 자연공원 내 사업추진 부적정(양양군 ○○○○과)

양양군 ○○○○과(구, ○○○○과)는 ○○○○공원 내 양양군 ○○○면 ○○○리 000번지 외 00필지 상에 “2013년 ○○○○지역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2013. 3. 18.)을 하면서 사업부지 면적(30필지, 배수로 1.27km, 저류지 5,300㎡, 총면적 9,475㎡)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사업임에도 같은 법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없이 2013. 3. 26. 공사를 착공하여 2013. 7. 5. 준공하였다.

〈○○○○지역 정비사업 현황〉

신청인	신청위치	용도지구	점용면적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공원위원회 심의	협의 일자	비고
양양군수	강원도 양양군 ○○면 ○○리 000번지 외 00필지	공원자연 환경지구, 공원자연 마을지구	9,475㎡ L=1.27km 저류지= 5,300㎡	대상	대상	'13.4.8	

위와 같이 자연공원 내 “2013년 ○○○○지역 정비사업”이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없이 사업계획이 허가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전 사업착공과 관련하여 지방○○○○ ○○○와 지방○○○○ ○○○은 실무책임이, 지방○○○○ ○○○은 담당책임이 있다.

2. 양양군 자연공원 내 공원사업 시행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3조에 따르면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하고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로써 주차장 등의 교통·운수시설을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변경할 때에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환경현황조사,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대기 및 수질 변화 분석, 폐기물 배출분석,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양양군 ○○○○사업소는 자연공원 내 주차장 시설인 “○○○○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립공원위원회(강원도 ○○국 ○○과)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에 반영하여 공원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공원계획에 반영 없이 행위허가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공원계획 결정·변경 시 필요한 환경현황조사,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폐기물 배출분석,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에 관한 평가를 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허가하였다.

〈○○○○ 주차장 조성사업 현황〉

신청인	신청위치	용도지구	점용 면적(㎡)	전략또는 환경영향 평가	공원위원회 심의	허가 일자	비고
양양 군수	강원도 양양군 ○○읍 ○○리 000-00번지외 0필지	공원마을 지구	6,731	대상	대상	'15.9.14	

위와 같이 양양군 자연공원 내 공원사업 시행허가 업무처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지방○○○○○ ○○○은 실무책임이 있다.

3. 횡성군 자연공원 내 공원사업 시행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 제23조제2항, 제7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21조제2항, 제40조에 따르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는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연공원에서는 「초지법」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대상 중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매립·간척 그 밖의 토질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의가 이루

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자연공원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에 의하면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중 제18조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장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초지법」 제23조제1항, 제2항은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181)은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제1호),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제2호),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되는 경우(제3호),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제4호)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황성군 ○○○○과는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 조성허가(1993, 1982 ~ 1983)를 받은 후 「초지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농작물재배용지(전)로 전용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초지 전용허가 협의 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함에도, 이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초지전용을 허가하였다.

181) 「초지법」 제2조제4호 "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애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초지 전용허가 현황〉

신청인	신청위치	용도지구	대지 면적(㎡)	소규모환경 영향 평가	공원위원회 심의	허가 일자	비고
○○○ 외2	강원도 횡성군 ○○읍 ○○리 0000번지외 00필지	공원자연 환경지구	39,380	대상	대상	'13.11.4	전
○○○ 외1	강원도 횡성군 ○○읍 ○○리 000-0번지외 00필지	공원자연 환경지구	182,157	대상	대상	'13.4.22.	전

위와 같이 횡성군은 자연공원 내 공원사업 시행허가 업무처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지방○○○○○ ○○○는 담당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 양양군수, 횡성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연공원 내에서 개발사업 승인 및 추진 시에는 「자연공원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